

제 1442 호
1989.7.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 공 보 관 반 총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2458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4
제 2459 호 :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개정	5
제 2460 호 :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개정	5
제 2460-1 호 :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5
제 2461 호 :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 2462 호 :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463 호 :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464 호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7
제 2465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이번계속)

양																				
량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465-1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8
제 2466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증개정조례	8
제 2467 호 : 서울특별시부녀보호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9
제 2468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당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9
제 2469 호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	9
제 2470 호 :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9
제 2471 호 :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472 호 :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473 호 :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474 호 : 서울특별시건설자재시험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0
제 2475 호 :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476 호 :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477 호 :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478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1
제 2479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2
제 2480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2
제 2481 호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2
제 2482 호 :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3
제 2483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3
제 2484 호 : 서울특별시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3
제 2485 호 :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계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13
제 2486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증개정조례	14
제 2487 호 : 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증개정조례	14
제 2488 호 : 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	14
제 2457 호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	15

㉑ 구 칙

제 2290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15
-----------------------------	----

㉒ 공 고

제 557 호 : 서울특별시 (구) 공금수납대행기관지정	15
제 559 호 : 2중전기공사업면허행정처분	15
제 560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	16
제 587 호 : '89하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	16

◎ 구 고 시

제 14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	17
제 38 호 : 도시계획사업 (낙산공원일부및도로·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18
제 6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9
제 194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인가	19

◎ 구 공 고

제 77 호 : 적인개각사용승인	19
-------------------------	----

◎ 사 령

◎ 서울특별시조례제2458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조례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
회계, 5급정원내용중 보진직 "3"을 "1"
로하고 "의무직"을 "약무직1" 및 "의무 직
은 간호직1"을 신설하며

6급정원내용중 보진직 "10"을 "6"으로하
고 "약무직2 및 간호직2"를 신설하며,
7급정원내용중 보진직 "14"를 "6"으로
하고 "약무직3" 및 "간호직5"을 신설하
며, 8급정원 "38"을 "39"로 하고 정원
내용중 "간호직1"을 신설하며, 9급정원
"13"을 "12"로 하고 정원내용중 "보진
직1"을 삭제한다.

기능직직원 "129"를 "417"로하고 정원내
용중 10등급만에 "건축원3, 통신원3, 교
환원3, 전기원20, 기계원25(기계18, 영사
7), 사무보조원194, (타자79, 집배2, 조
무113), 방호원40"을 신설하고, "고용직"
란을 삭제한다.

나. 수도특별회계, 기능직정원 "5"를
"28"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건축
원1, 교환원4, 전기원4, 기계원2, 사무보
조원8(타자3, 집배1, 조무4), 방호원4"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1-2) 경찰국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
직정원 "72"를 "536"으로 하고 정원내

용중 10등급만에 "통신원3, 교환원5, 전
기원15, 기계원35, 사무보조원391(타자48,
조무342), 방호원14"를 신설하며, "고용
직"란을 삭제한다.

(별표1-3) 소방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 기
능직정원 "5"를 "16"으로하고, 정원내용
에 "10등급: 교환원1, 전기원2, 사무보조
원8(타자3, 조무5)"을 신설하며, "고용직"
란을 삭제한다.

(별표2) 구청지방공무원정원표 가. 일반
회계, 기능직정원 "1284"를 "3288"로하
고 정원내용중 10등급만에 "건축5, 교
환원68, 전기원341, 농림원38(원내38),
사무보조원906(타자355, 집배22, 조무529),
방호원 548"를 신설하며, 동관중 기계
원 "65"를 "165(기계 158, 영사 7)로
하고, "고용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고 용 직	4468	방범원 4468

나. 특별회계 기능직정원 "62"를 "902"로 하
고 정원내용중 10등급만에 "전기원23, 기
계원307, 사무보조원504(타자42, 조무462), 방
호원6"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3) 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 7급
정원 "1"을 "2"로하고 정원내용에 "간호
직1"을 신설하며 8급정원 "5"를 "6"으로하
고 정원내용에 "간호직1"을 신설하며 의료직
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12"를 "58"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만에 "건축원1,
교환원3, 전기원5, "농림원1(원내1), 사무보
조원35(타자3, 조무32), 방호원8"를 신설하
며, 동관중 기계원 "1"을 "3"으로하고 "고
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4) 농촌지도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
직 "4"를 "19"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

급란에 "기계원1, 사무보조원13 (타자1, 전담1, 조무11), 방호원1"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59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실처조례중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 "20"을 "21"로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1"을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9"를 "55"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건축원2, 교환원3, 전기원2, 기계원3, 농림원1 (원예1), 사무보조원28 (타자5, 집배1, 조무22), 방호7"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0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전자계산소 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자계산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1"을 "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사무보조원2 (타자1, 조무1)"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0-1호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전자계산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전산처리과및 전산개발과"를 "전산처리과, 전산개발과및 전산관리과"로, 동항중 "전산처리과장"및 "전산개발과장"을 "전산처리과장, 전산개발과장 및 전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라목내지 사무"를 삭제하고 "아목"을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료입력실 운영관리

제5조제2항제4호중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4. 전산관리과
 - 가. 전산실운영 및 관리
 - 나. 전산통신망운영관리
 - 다. 전산자료 관리
 - 라. 전자계산기 기술연구 및 정보교육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자계산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급	정원	내 용
3급	1	행정직 1
4급	2	행정직 4급상당 별정직 또는 전문직1
5급	4	행정직1, 행정 또는 5급상당 별정직3
6급	5	행정직 5
7급	6	행정직6, 기계직1, 전기 또는 통신직1
8급	15	행정직12, 처적직1, 기계직1, 전기 또는 통신직1
9급	9	행정직6, 기계직1, 전기 또는 통신직2
별정직	79	6급상당15(전산처리사9, 기계처리사3, 전산통신기사1, 전산기계기사1, 전산전기기사1) 7급상당12(전산처리사7, 천공관리자1, 프로그래머1, 기계처리사3) 8급상당37(전산처리사11, 기계처리사5, 천공원(상)21) 9급상당15(천공원(하)9, 기계처리사6)
기능직	6	10등급 : 운전원1, 사무보조원5(타자1, 집배1, 조무3)
합 계	128	
<p>◎ 서울특별시조례제2461호</p> <p>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 "15"를 "16"으로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1"을 신설하며, 8급정원 "9"를 "1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1"을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p> <p>기능직정원 "18"을 "19"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함에 "건축원1, 통신원9, 표본원4, 전</p>

기원16, 기계원23(기계22, 영사1), 농업원5(원내5), 사무보조원84(타자1, 집배1, 조무82), 방호원34"를 신설하며, "고용직"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2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7"을 "107"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안에 "건축원1, 교원원2, 전기원10, 기계원1, 농업원2(위생2), 사무보조원43(타자1, 조무42), 방호원41"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3호

서울특별시새중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새중문화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새중문화회관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20"을 "189"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안에 "건축원11, 통신원7, 교원원3, 전기원28, 기계원21(기계20, 영사1), 사무보조원58(타자3, 집배1, 조무64), 방호원31"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4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보건환경연구원 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 "23"을 "24"로하고 정원내용중 "약무직1"을 신설하며, "의토직"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10"을 "25"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안에 "전기원1, 기계원1, 위생원1, 사무보조원9(타자1, 집배1, 조무7), 방호원3"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5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원장은 "지방의사"를 "의무부 기간"으로, 제6조제2항중 약제과장은 "지방약사"를 "약무직"으로, 동항중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를 "지방간호직"으로 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5급란위에 "3급5"를 신설하고 정원내용란에 의무직 "5"를 신설하며, 5급정원 "5"를 "15"로 하고 정원내용에 "약무직5" 및 "간호직5"를 신설하며, 6급정원 "18"을 "79"로 하고 정원내용에 "약무직11" 및 "간호직50"을 신설하며, 7급정원 "22"를 "122"로 하고 정원내용에 "약무직12" 및 "간호직88"을 신설하며, 8급정원 "33"을 "219"로 하고 정원내용에 "간호직186"을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21"을 "309"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건축원5, 교원원16, 전기원7, 기계원18, 위생원12, 사무보조원185(타자5, 집배5, 조무175), 방호원45"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65-1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309"를 "314"로하고 정원내용중 사무보조원 "185"를 "190"(타자5, 집배5, 조무180)으로하며 합계정원 "810"을 "8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6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1) 지방공무원정원표(1)근로자 회관, 기능직정원 "1"을 "13"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기계원2, 사무보조원6(조무6), 방호원4"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2-2) (2)부녀복지관, 기능직 "7"을 "52"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3"을 "48"로하고 정원내용에 "전기원4, 기계원3, 사무보조원29(타자3, 집배3, 조무23), 방호원9"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2-3) (3)근로청소년회관, 기능직 "4"를 "39"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2, 기계원5, 위생원6, 사무보조원12(타자2, 조무10), 방호원10"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7호

서울특별시부녀보호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부녀보호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8급정원 "1"을 "3"으로하고 정원내용에 "간호직2"를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2"을 "17"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1, 사무보조원10.(타자1, 조무9), 방호원4"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8호

서울특별시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아동 상담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7급정원 "1"을 "3"으로하고 정원내용에 "간호직2"를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 기능직정원 "3"을 "14"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기계원1, 사무보조원8 (타자1, 조무7), 방호원2"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2.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69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을 "1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전기원1, 기계원3, 사무보조원4.(타자1, 조무3), 방호원3"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70호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업시험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2"을 "11"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1, 기계원1, 사무보조원4, (타자1, 집배1, 조무2), 방호원3"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래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71호

서울특별시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2"를 "11"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사무보조원6 (타자4, 조무2), 방호원3"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래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72호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 공사본부정원표, 기능직 "7"을 "29"으로하고 기능직정원 내용중 10등급란에 "통신원1, 사무보조원16 (타자9, 집배1, 조무6), 방호원2"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별표) 나. 건설자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45"를 "78"으로하고, 기능직정원내용중 10 등급란에 "건축원1, 전기원3, 기계원1, 사무보조원 23(타자1, 조무22), 방호원3"을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래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73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건설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178"을 "254"로하고 정원내용중 10 등급란에 "건축원1, 전기원4, 기계원5, 사무보조원12(타자4, 집배4, 조무4), 방호원14"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래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조례제2474호

서울특별시건설자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 시험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3"을 "12"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기계원3, 사무보조원4(타자1, 집배1, 조무2), 방호원2"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래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75호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
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례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
조례증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 정원
“56”을 “67”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란
에 “전기원2, 사무보조원5(타자 1, 집배
1, 조무 3), 방호원4”를 신설하며, “고
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현원
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
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76호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 “26”
을 “57”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란에
“전기원1, 기계원18, 사무보조원4(타자 2,
조무 2), 방호원8”을 신설하며, “고용직”
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
기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77호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녹지사업소 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8”을 “39”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란
에 “전기원1, 농림원15(원예15), 사무보조
원5(타자 2, 조무 3), 방호원10”을 신설
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
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
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78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
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증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능직정원
“7”을 “83”으로하고, 정원내용증 10등급
란에 “전기원6, 기계원3, 농림원16(원예15)
사무보조원30(타자3, 집배1, 조무26), 방호
원21”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자동차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3"을 "67"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2, 기계원2, 사무보조원48 (타자 37, 집배 2, 조무 9), 방호원12"를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79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7급정원 "31"을 "33"으로하고 정원내용에 "간호직 2"를 신설하며 "의료직"란을 삭제한다.</p> <p>기능직정원 "12"를 "228"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건축원1, 통신원1, 교원원2, 전기원2, 기계원2(기계 1, 영사1), 농림원13 (원예 13), 위생원1, 사무보조원137(타자 2, 집배 1, 조무 134), 방호원57"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기능직정원"87"을 "15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 1, 기계원 49, 사무보조원4(타자 1, 집배 1, 조무 2), 방호원9"을 신설하며, 동관중 기계원"8"을 "57"로하고, "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조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서울특별시조례제2482호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통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7급정원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기능직	2	10등급 : 사무보조원 2(타자1, 조무1)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83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한강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313"을 "717"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란에 "전기원48, 기계원137, 농림원7(원예7), 사무보조원145(타자11, 집행5, 조무129), 방호원67"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84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도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31"을 "967"로하고, 정육내용중 10등급란 전기원 "3"를 "153"으로, 기계원 "2"를 "71"로하고 동란에 "사무보조원616(타자12, 집행12, 조무592), 방호원7"을 신설하며,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조례제2485호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정원 "13"을 "15"로하고 정원내용중 16등급란에 "사무보조원1(타자1, 조무1)를 신설하며

<p>“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소방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 소방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구분	정원	정원 내용		구분	정원	정원 내용	
기능직	2	10등급: 사무보조원2(조무2)		기능직	2	10등급: 사무보조원2(조무2)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6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1) 지방공무원정원표 소방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소방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소방공무원정원표 별정직란 다음에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고용직”란을 삭제한다.</p>				
구분	정원	정원 내용		계급별	정원	정원 내용	
기능직	83	10등급: 기계원 21, 사무보조원 62(타자 20, 조무 42)		기능직	9	기계원 1, 사무보 10등급: 조원 6(타자 1, 조무 5), 방호원 2	
고용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직			73	
구분	정원	정원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능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조례제248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개정조례</p>			
고용직	73	사관 73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기능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고용직 현원은 현원이 없어질때까지 전환된 기</p>			

농직 정원에 의한 현원으로본다.

- 공 포 문 -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898. 6. 3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457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강남도서관, 마포도서관 및 구로도서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규칙제2290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1항중 외곽계장은 "지방보건기과"를 "외무기과 또는 약무기과"로 등합중 기록보건계장은 "지방보건기과"를 "외무기과 또는 간호기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557호

서울특별시(구)공금수납 대행기관 지정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금 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7. 1.

서울특별시장

1. 수납대행기관 : 한국산업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2. 수납대행기관업무 : 서울특별시(구) 공금 수납대행
3. 수납업무대행기간 : '89. 7. 1부터

◎서울특별시공고제559호

2종전기공사업면허 행정처분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31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9. 7. 1.

서울특별시장

- 다 - 음 -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개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1017	동서전력공사	정수식	반배동 851-8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면허취소
1274	건진실업(주)	김용진	반포 748-3	"	"

◎서울특별시공고 제560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제57호(82. 2. 6)로 관리처분 계획인가되고 주택 4432-0948(83.11.10)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된 역촌구역내 분양지 2구획 1호의 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31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

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미 수경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공 고 내 용 -

- 가. 명 칭 :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 공람공고
- 나. 위 치 : 은평구 역촌동 산 22-2의 39필지
- 다. 면 적 : 13,239㎡
- 라.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마. 관리처분계획변경내용

구 분	구 획 번 호	환 지 면 적	권 리 면 적	비 고
변 경 전	2-1	1316.00㎡	1283.00㎡	분 양 지
변 경 후	2-1	1283.00㎡		분 양 지
변 경 후	2-6	32.00㎡		채비지(신생)

1989. 7. 1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 제587호

1989년도하반기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89. 7. 1.
서울특별시청

1.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2.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전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서 명예퇴직 신청개시일 현재 20년이
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자

2. 명예퇴직신청

가. 신청기간 : '89. 8.11 ~ 8.25(15일간)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
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
게 제출할것.

3. 명예퇴직대상자의 심사절정 및 봉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
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봉지한다.

4. 명예퇴직대상자의 사직원 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지급
소속기관장은 명예퇴직수당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본인이 의사에 반한 신청의 배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
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구분	종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27m	은평구 갈현동 139-24	은평구 갈현동 139-24	
변경		2	8m	27m	-	-	폐지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은평구고시 제1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 한다.

1989. 6. 28

은 평 구 정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주체 : 신한은행 제3차 주택조합
조합장 하 태근
동학건설(주) 대표 박 상 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 치 : 은평구 갈현동 산139-2의
2필지
나. 면 적 : 4,351㎡
다. 건축면적 : 12,292,146㎡
라. 규 모 : 6-12층 아파트 1동 111
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89. 7 ~ 1990. 12.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2	8m	10m	은평구 갈현동 139-22	은평구 갈현동 139-24	
변경	"	2	8m	10m	"	"	폐지
기정	"	2	8m	10m	은평구 갈현동 139-2	은평구 갈현동 139-2	
변경	"	2	8m	10m	"	"	폐지
신설	"	3	6m	44m	은평구 갈현동 139-2	은평구 갈현동 139-24	신설

●종로구고시 제38호

도시계획사업(낙산공원일부및 도로, 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고시 제787호('88. 9.23)로 도시계획사업(낙산공원 일부 및 도로, 녹지)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게 보입니다.

1989. 7.11

종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종로구 강신동 9-471번지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창신1구역 진입로 개설 및 녹지 조성공사)
- 다. 사업규모: 광원조성 2,295.8㎡
녹지조성 1,337.4㎡
도로개설 B=6m,
L=167m
- 라.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 마.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달조: 1988. 9.23~1989. 6.30
○변경: 1988. 9.23~1989.12.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조서: 생략

◎구로구 고시 제61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 하수도)
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54호(89. 6. 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 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1.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20~305-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오류동-광명시계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B=20-30m L=710m 하수도=D=600mm L=1,42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인가일-89. 12. 31.
6.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첨부 토지 및 건물 조서1부.

◎도봉구 고시 제194호

도시 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1. 건설부공고제8호('86. 1. 23.)로 토지구획경리사업 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공고제365호('80. 12. 5.)로 환지 처분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산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1.


도봉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도봉구 양둔동 648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
 - 명칭: 서암종합시장신축
- 다. 사업시행규모: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5층
 - 대 지: 1,321.4㎡
 - 건축연면적: 3,635.7㎡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3-1. 서암실업(주)
 - 대표 장 대 익
- 마. 사업기간: '89. 7. 1. - '90. 6. 30
- 바. 토지, 건물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생략)
- 사. 위치 및 계획 평면도(생략)

◎마포구 공고 제77호

관안재교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아현제3동장

관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인, 칙 제 5조 규정에 의거 재교부함을 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자: 1989. 6. 29 1989. 7. 1. 마 포 구 청 장	1. 재교부인
	인 영 
공 인 명	아현제3동장인(민원사무전용)
2. 사유: 분실	

◎1989년 6월 27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명계269호

성 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 급
김 대근	내무국 근무 (시민생활보호대책본부 기획상황관요원) (*89. 6. 27-별도지시시까지)	송 파 구	지방행정사무관

◎1989년 7월 1일자 6급 건축직공무원 전보 및 파견 명계272호

성 명	발령사항	현 부 처	직 급
배경설	은 평 구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건축기사
윤병규	송 파 구	감사담당관	"
이경용	도 봉 구	조사담당관	"
박종일	강 동 구	총 무 과	"
허광훈	강 남 구	건축사도과	"
유영근	중 구	새중합회관	"
정한택	서 초 구	종합건설본부	"
박송운	서초구 파견(*89. 7. 1-별도지시시까지)	건축지도과	"
이강복	관악구 파견(")	재개발과	"
조방혁	종로구 파견(")	건설생활과	"
박래환	중랑구 파견(")	종합건설본부	"
조용희	노원구 파견(")	"	"
김연태	구로구 파견(")	"	"
안현석	강 동 구	내 무 국	"
경부합동민원실파견(89. 7. 1-89. 7. 31)			

◎ 1989년6월30일자 기술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명제27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정봉래 주철식 하해동	지방농업기원 " "	농축과 양정과 동대관구	농업기원 " "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비서관에 보함.			명 환 1989. 6.28 대 통 령			
◎ 1989년7월1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파견 명제27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광철 박영식	대통령경호실파견('89. 7. 1-'90. 6. 30) " (")	종로구 마포구	지방보건의사보 지방보건의기원			
6급 기술직공무원 휴직			명제27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세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기계기사			
4급 공무원 승진임용			명제277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위	발령직급	현부서	직위	직급
김정만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동물부장	지방수의관 (4급)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진료과장	지방수의관 (5급)
6급이하 공무원 파견 및 전보			명제278호			
성명	발령사			현부서	직급	
이종욱 김남호 채종열 정철호 김지철 장태일 김종남	관재과 파견(89. 7. 1-89. 9. 30) 사회과 파견(" -89. 12. 31) 세무지도과 파견(") " (") 문화담당관 파견(") " (") " (")			성동구 노원구 동작구 노원구 관악구 송파구 관악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	

성명	발령사항	원부처	직급
이점래	문화담당관 파견(89. 7. 1-89. 12. 31)	송파구	지방행정주사로
하경세	강동구(선사주거지관리요원)파견	문화담당관	지방행정6급상당
송교준	행정과(가로경비추진반)파견 (89. 7. 1-89. 12. 31)	중구	지방행정주사
소순근	성북구	중구	"
유광섭	종로구	새문на회관	"
양승무	중구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로
민장호	중구	"	지방행정서기
송영수	종로구	노원구	"
문창식	동대문구	도봉구	지방행정서기보

㉠ 1989년 7월 1일자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직임용(농업-일업) 병제279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처	직급
이원영	노원구 지방일업기사보	노원구	지방농업기사보
정봉래	농축과 지방일업기원	농축과	지방농업기원
주철식	양정과 "	양정과	"
하해동	동대문구 "	동대문구	"
김운식	도봉구 "	도봉구	"
김성호	도봉구 "	도봉구	"
전인호	마포구 "	마포구	"
권오국	강서구 "	강서구	"
박민영	구로구 "	구로구	"
권세동	강남구 "	강남구	"
김남식	노원구 "	노원구	"
조원상	송파구 "	송파구	"
박동용	송파구 "	송파구	"
노승호	용산구 지방일업기원보	용산구	지방농업기원보
정경우	구로구 "	구로구	"
박상재	구로구 "	구로구	"
이성재	강남구 "	강남구	"
이재룡	강동구 "	강동구	"

○ 1989년 7월 3일자 5급 공무원 승진 및 진보				경제28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윤진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입업기과		강남구	지방입업기사		
이병동	서울대공원 지방수의관(5급)		농축과	지방수의사		
이강훈	"		구로구	"		
김성삼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지방수의관(5급)		
관리사업소						
공무 국외 여행 명령						
여행차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종합운동장관리 사업소	지방 행정주사보	최용선	일본	89. 8. 8 -8. 14 (7일간)	(주) OB 베어즈부담 현황조사	일본야구장 시설관리
농축과	" 수산기과	박주호	일본 대만	89. 7. 10 -7. 19 (10일간)	사비 (\$1,857)	동남아 유통제도및 시설시찰
내무국장	이사관	백상승	일본	89. 7. 3 -7. 5	사비 (\$24,137)	동경도 도시행정 비교 연구조사단파견
세정과장	서기관	정진극		89. 7. 3		
의견과	지방행정 사무관	권영규		-7. 12 (10일간)		
공보관	"	임동남				
예산담당관	"	금동영				
"	서기	정현부				
부자관리담당관	행정사무관	전희구				
"	행정주사보	송종식				
시정개발담당관	행정사무관	정희용				
지방자치담당관	"	박우병				
세정과	"	이원기				
사회과	"	박문규				

24-24 제1442호 시 보 1988. 7. 1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부내복지과 상공과	행정사무관	이규일 박동봉	일본	89. 7. 3 - 7. 12 (10일간)	시비 (\$24,137)	동경도 도시행정 비교연구조사단파견
청소년사업관	별정직5급 상당	상정우	미국	89. 7. 30 - 8. 10 (12일간)	시비	미국청소년상담기관 시찰
회계과 사무지도과 생경과	서기관 행정사무관	송용석 김원영 나광순	미국	89. 7. 24 - 8. 7 (15일간)	한국상업 은행부담	새입금수납및 지출 에관한비고시찰

서울특별시